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4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권영진 · 김승수 · 박충권

조지연 • 권영세 • 인요한

유영하 · 신성범 · 우재준

강명구 · 최형두 · 조정식

이상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과학 기술의 선점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공립과학관은 법적인 지원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설 재정비와 콘텐츠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일부를, 등록과학관에는"을 "일부와"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관할 구역 안의 공립 과학관 설립·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			
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			
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u>일부를, 등록과</u>	<u>일부와</u>		
<u>학관에는</u> 그 운영에 필요한 경			
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u><신 설></u>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		
	을 포함한다)는 관할 구역 안		
	의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u>②·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